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필요한 인력 9명(7급 8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1. 00. 공포·시행)되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1.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00.00. ~ 00.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단서 중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산업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인원 5명(7급 4명, 8급 1명), 보건 관리를 담당하는 인원 4명(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3명”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749”를 각각 “758”로 하고,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3”을 “7”로 하며, 의료기술주사보·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2”를 “6”으로 하고,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3”을 “14”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749”를 각각 “758”로 하고,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4”를 “8”로 하며, 의료기술주사보·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2”를 “6”으로 하고,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2”를 “13”으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454”를 “4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445”를 “44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02”를 “404”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략)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으며, 별표 5의2의 정원 중 <u>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u>	③ ----- -----. ----- ----- ----- ----- ----- 산업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인원 5명(7급 4명, 8급 1명), 보건 관리를 담당하는 인원 4명(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④ ~ ⑩ (생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5]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49</u>	<u>758</u>	+9
일반직 계	<u>749</u>	<u>758</u>	+9
·	·	·	
·	·	·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3</u>	<u>7</u>	+4
·	·	·	
·	·	·	
의료기술주사보 · 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u>2</u>	<u>6</u>	+4
·	·	·	
·	·	·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u>13</u>	<u>14</u>	+1
·	·	·	
·	·	·	

[별표 5의2]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49</u>	<u>758</u>	+9
일반직 계	<u>749</u>	<u>758</u>	+9
·	·	·	
·	·	·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4</u>	<u>8</u>	+4
·	·	·	
·	·	·	
의료기술주사보 · 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u>2</u>	<u>6</u>	+4
·	·	·	
·	·	·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u>12</u>	<u>13</u>	+1
·	·	·	
·	·	·	

[별표 9]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8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54</u>	<u>456</u>	+2
일반직 계	<u>445</u>	<u>447</u>	+2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402</u>	<u>404</u>	+2
·	·	·	
·	·	·	